##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경과 및 주요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국회를 통과('07.4.30)하였습니다. 이 법은 장애계가 주장한 「장애인교육지원법안」과 교육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 대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법의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 1. 추진경과

- □ 「장애인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특수교육 관련 의원안 8개와 정부의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05.5~'07.3) o 장애계는 장애인부모회 등이 주축이 된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중심으로 「장애인의
- o 상애계는 상애인무모회 등이 수축이 된 상애인교육권연대들 중심으로 '상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06.5,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
- o 정부는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07.2), 교육위 상정('07.4.12)
- □ 국회 공청회('07.4.18), 4차례에 걸친 협의('07.4.19~25), 교육위 간담회 ('07.4.25) 후 정부안을 중심으로 33개 조문 중 이견조문 14개에 대한 합의 도출
- □ 교육위원회 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으로 국회 상임위('07.4.25), 법사위 ('07.4.30), 본회의 통과('07.4.30)

### 2. 주요 쟁점

#### □ 법 명칭

- o 장애계: 장애를 가졌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교육지원이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등' 추가
- o 정부 : 모든 장애인이 특수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장애인 등' 포함 곤란
- o 합의 : '장애인 등'을 추가하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수정
- □ '치료교육'을 '관련서비스'로 규정 여부 등
  - o 장애계 : 현행법의 '치료교육' 문구를 삭제하고, 기존 치료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장애아동 교육에 필요한 서비스 모두를 '관련서비스'로 규정

('07.05.01. 「장애인특수교육법」 제정 경과 등.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 장애계는 현행 치료교육교사는 물리, 언어, 작업치료 등 7개의 치료 영역을 1인이 모두 가르치는 형태여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
- o 정부: 쟁점이 되는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 등은 '관련서비스'에 포함하고 나머지 치료교육 영역은 현행 유지하면서 치료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
- o 합의 : 치료교육 조항 삭제, 관련서비스에 포함

#### □ 특수학급 설치기준 강화

- o 장애계 : 학교급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학교급별로 구분·강화하여 모법에 규정
- o 정부 : 설치기준을 강화하되 시행령에 규정
- o 합의 : 유치·초·중·고 별로 설치기준을 구분·강화하여 모법에 규정
- □ 특수교육 교원 배치기준 강화
  - o 장애계 : 교원 배치 규정을 강화하여 모법에 규정
  - o 정부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수정하여 교원배치 규정 강화
  - o 합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수정, 교원배치 규정 강화(정부안)

### 3. 통과 법률의 주요 내용

- □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연한 확대(제10조, 제19조)
  - o 장애인지원종합대책('06.6.28)에 포함된 의무교육 연한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화
- □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조기발견체제 구축(제3조, 제14조, 제18조)
- o 3세미만 영아의 무상교육으로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 교육에 관한 절차 및 권리 규정 신설 → 사교육 등으로 인한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 기대
- □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강화, 평생교육지원 조항 신설 (제5조, 제 29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 o 장애인의 대학교육이나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대학 내의 장애학생지원센터, 편의제공 등 학습지원,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 □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제11조)
  - o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03~'07)」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특수 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진단·평가, 교수·학습활동 지원, 순회교육, 가족지원 등 담당
- □ 법 시행 시기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 주요 변경 내용

	기존법	제정법	입법 의의 및 효과
명칭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아동의 교육권 강화
의무 교육연한	· 초·중-의무교육 · 유치·고교-무상교육	・유치·초·중·고교-의무교육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장애영아 교육	내용 없음	·3세미만 장애영아-무상교육 (전공과의 무상교육도 실시)	·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 가능, 장애아동 사교육비 절감
고등교육	내용 없음	·대학 내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마련, 각종 학습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의 고등교육권 확보
평생교육	내용 없음	·장애인의 평생교육 근거 마련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근거 마련
특수교육 실태조사	・5년마다 실시	・3년마다 실시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정확성 제고
특수학급 설치기준	·시행령 규정 : 1~12인 의 경우 1개 학급 설치	<ul> <li>유치원 : 1~4인일 경우 1개, 초과시 2개 학급 이상 설치</li> <li>초등·중학교 : 1~6인일 경우 1개, 초과시 2개 학급 이상 설치</li> <li>고등학교 : 1~7인일 경우 1개, 초과시 2개 학급 이상 설치</li> </ul>	・설치 기준 강화하여 모 법에 명시
특수교육 지원센터	내용 없음	·지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을 모법에 명시	· 특수교육 관련 지원 강화 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
치료교육	·특수학교에 치료교육 담당 교원 배치하여 치료교육 실시	·치료교육 조항 삭제, 치료지원을 관련서비스에 포함	·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 질 제고

# 4 향후 추진 계획

- □ 시행령 준비
- o '07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마련
- o 시행령 마련 작업시 치료교육 관련 쟁점의 해결방안 동시 강구(교육부)
- □ 「제3차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08~'12)」수립
  - o 본 법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종합계획 수립 추진